- 2020년도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-승진시험(소방장·소방교) 시행계획 공고

2020년도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승진시험(소방장·소방교)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22일 대 구 광 역 시 장

1. 시험일시 : 2020. 9. 6.(일) 11:00 ~ 12:15(75분)

2. 시험장소 : 정화중학교(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84길 123)

※【붙임 1】시험장소 안내 참조

3. 선발인원 ※ 선발인원은 인사운영 등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현 계 급	선 발 계 급	선 발 인 원
소방교	소방장	14명
소방사	소방교	16명

4. 시험과목

구 분 시험과목		문 항 수	
소방장	소방법령Ⅱ, 소방법령Ⅲ, 소방전술	과목당 25문항	
소방교	소방법령 I , 소방법령Ⅱ, 소방전술	피크 6 23판 8	

♠ **출제범위**(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8 참고)

•소방법령 I : 소방공무원법(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
• 소방법령II: 소방기본법,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•소방법령皿 : 위험물안전관리법,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

・소방전술 : 화재진압・구조・구급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・기술 및 기법 등

(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별표1 참고)

※ 법령관련 문제는 필기시험일(9. 6.) 현재, 시행중인 법령에서 출제

5. 시험방법

- 가. 제1차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(4지 1선택형)
- 나. 제2차 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

6. 응시자격

- 가. 제1차시험 실시일 현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자
- 나. 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1항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

7. 응시원서 접수

- 가. 접수기간 : 2020. 7. 27.(월) 10:00 ~ 7. 30.(목) 18:00 / 4일간
 - ※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, 시험응시 접수취소는 원서접수 기간내만 가능
- 나. 접수방법 : 중앙소방학교 119고시(http://119gosi.kr) 접수
 - ※ 응시표 출력 8. 24.(월)부터 가능

8. 합격자 결정방법

- 가.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매과목 만점의 40% 이상, 전과목 만점의 60% 이상 득점한 자
- 나. 최종합격자 결정은 제1차 필기시험 성적 60% 및 당해 계급에서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 40%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의해 결정

<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 초과 동점자의 합격결정>

- ①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이 높은 사람
- ②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
- ③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
- ④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

9. 합격자 발표

가. 일 시 : 2020. 9. 25.(금) 10:00

나. 방 법 : 대구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공문 통지

다. 불합격자 성적 공개 : 2020. 9. 25.(금) ~ 9. 28.(월) / 119고시 개인별 확인

10. 필기시험문제 문의기간 운영

가. 기 : 2020. 9. 6.(일) 13:00 ~ 9. 7.(월) 24:00

나. 방 법 : 중앙소방학교 119고시(http://119gosi.kr)에 신청

※ 로그인 → 질의응답 → 필기시험 문의 → 문의서(붙임 4) 첨부

다. 자격요건 : 필기시험에 응시한 응시자만 문의 가능

라. 시험관리위원회 구성・운영 : 문의사항 처리(필요시 운영)

11. 응시자 유의사항

가. 일반사항

-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대구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응시자는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, 이동 소요시간을 반드시 확인 하고 시험 당일 10: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(08:40부터 시험실 입실 가능)

(10:30 시험장 현관 폐쇄 ⇨ 입실 불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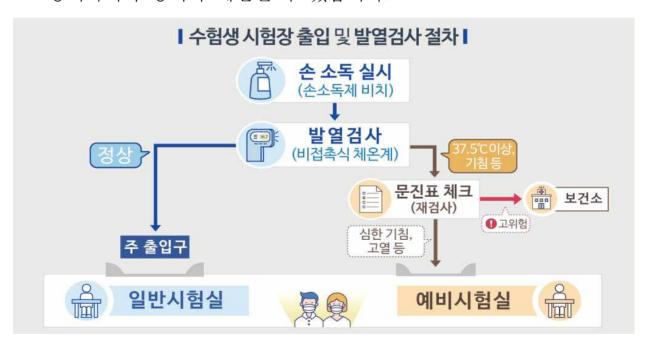
- ※ 발열검사 시간 등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시험장으로 이동 하시기 바랍니다.
- 시험장에는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할 수 없으며,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가 불가함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본인 확인을 위해 <u>응시표</u>와 <u>신분증</u>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공무원증 중하나)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,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 - ※ 응시표 출력 : 중앙소방학교 119고시(http://119gosi.kr)에서 출력
-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, 수분 과다섭취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배부된 모든 답안지 및 문제책은 반드시 제출
 - ※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**재입실이 불가** 하며,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.
- O 필기시험 답안지에는 반드시 **컴퓨터용 흑색사인펜** 만을 사용하여 표기

하여야 하며, 답안은 매 문항마다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"●"로 표기하여야 하고,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여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.(수정테이프·수정액 등 사용금지)

- ※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이 아닌 다른 필기구 사용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※ 답안지는 훼손·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(▮▮▮)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
- 답안지 채점은 OMR답안지 판독결과에 따르며,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, 이중표기 또는 연필·볼펜 등으로 덧칠, 예비표기 하는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, 특히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,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,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 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시험 중에는 다른 응시자와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, 일체의 통신장비(휴대폰, 스마트워치 등) 및 전산기기(전자계산기, 전자수첩, MP3 등)를 휴대할 수 없으며, 시험 도중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 자로 간주됩니다.
- 시험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고, 시험 종료 후 계속 하여 답안작성을 하는 등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됩니다.
-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정시간 안내와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는 참고하시되,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계산, 카메라, 음성인식 및 통신기능 등이 내장된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
- 시험장(학교 전체) 전 구역은 **흡연을 할 수 없으며**, 화장실 등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깨끗이 사용해야 합니다.
- 본 공고문 및 시험당일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 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,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코로나-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

- 시험장은 안전한 시험 진행을 위해 시험 전·후 전문업체를 통한 방역 (소독)을 실시하며, 응시자는 코로나-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자는 시험 당일 마스크를 착용해야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으며, 시험 중에도 계속 착용하여야 합니다.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으니 개인별 마스크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, 분실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 소지를 권장합니다.
 - ※ 응시자 신분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시 벗어 신분 확인에 협조 바랍니다.
- 응시자는 시험장 현관 입구에 비취된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,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, 발열(37.5℃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)이 확인된 유증상자는 의료반 문진 후 동의서를 작성하고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

○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**자가격리자는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**합니다. 단,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신고기간 내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, 관할보건소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 및 외출허가 등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,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(단, 확진자는 응시 불가)

〈자가격리자 사전 신고 안내〉

- ① 신고기간 : 2020. 8. 31.(월) 09:00 ~ 9. 4.(금) 18:00까지
- ② 신청방법: 전화신청(대구소방안전본부 행정지원팀 T. 053-350-4011)
- ③ 제출서류: 자가격리통지서 사본 이메일(jtg8655@korea.kr) 제출
 - ※ 별도 시험장 안내 등은 2020. 9. 4.(금) 신청자 개별유선 통보
 - ※ 상기 신고기간 이후에는 자가격리자 사전 신고를 받지 않으며, <u>신고하지</u> 않은 자가격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 - ※ 시험응시가 불가한 응시생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,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.
- O 시험 중 시험실 창문 및 출입문을 상시 개방할 수 있습니다.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나 코로나-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점을 양해 바랍니다.
- 시험장 내에서는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며, 시험 종료 후에도 시험실별 시간 간격을 두고 퇴실이 이루어 질 예정이니, 시험본부요원의 통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, 호흡기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(☎1339, 지역번호+120)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, 시험시행기관(☎053-350-4011)으로도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붙 임 1. 2020년도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장 안내 1부.
 - 2. 승진시험 소방전술 세부 출제범위 1부.
 - 3.「소방공무원법」출제범위 1부.
 - 4. 필기시험문제 문의서 1부.
 - 5. 코로나-19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.
 - 5-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수칙 1부.
 - 5-2. 감염병 예방수칙(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) 1부.
 - 5-3. 2차검사 문진표(체크리스트) 1부.
 - 5-4. 예비시험실 응시에 따른 수험생 동의서 1부. 끝.

2020년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장 안내

정화중학교

○ 위 치 :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84길 123(범어동 산105-1)



◇ 교 통 편

- ① 지하철 2호선
 - **만촌역 하차 후 도보 20분**

※ 버스환승: 만촌역 3번 출구로 나와서 100, 234, 349, 449, 524, 수성1, 수성3-1,

순환3번 버스 이용 [환승 정류소명: "만촌육교1"]

② 버스: 하차 후 도보 5~10분

- 동도중학교건너 : 100, 234, 349, 449, 524, 수성1, 수성3-1, 순환3

- 동도중학교 앞 : 100-1, 234, 349, 449, 524, 수성1-1, 수성3, 순환3-1

승진시험과목「소방전술」세부 출제범위 (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별표 1)

분 야	출제범위	비고
화재 분야	- 화재의 의의 및 성상 - 화재진압의 의의 - 단계별 화재진압활동 및 지휘이론 - 화재진압 전술 - 소방용수 총론 및 시설 -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등 -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(화재분야) - 안전관리의 기본 - 소방활동 안전관리 - 재해의 원인, 예방 및 조사 - 안전 교육 - 소화약제 및 연소·폭발이론	소방교 및 소방장 승진시험에서는 제외 소방교 승진시험에서는 제외
	- 위험물성상 및 진압이론 - 화재조사실무(관계법령 포함) - 구조개론	소방교 승진시험에서는 제외
구조 분야	- 구조활동의 전개요령 - 군중통제, 구조장비개론, 구조장비 조작 - 기본구조훈련(로프,확보,하강,등반,도하등) - 응용구조훈련 - 일반(전문) 구조활동(기술)	
	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(구조분야) 안전관리의 기본 및 현장활동 안전관리 119구조구급에관한 법률(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)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) 	소방교 및 소방장 승진시험에서는 제외 소방교 및 소방장
구급 분야	- 응급의료 개론 - 응급의료 개론 - 응급의학 총론 - 응급의료장비 운영 - 심폐정지, 순환부전, 의식장해, 출혈, 일반외상, 두부 및 경추손상, 기도·소화관이물, 대상이 상, 체온이상, 감염증, 면역부전, 급성복통, 화학손상, 산부인과질환, 신생아질환, 정신장해, 창상	승진시험에서는 제외 소방교 승진시험에서는 제외
	• 0 - 소방자동차 일반 - 소방자동차 점검·정비 - 소방자동차 구조 및 원리 - 고가·굴절 사다리차	

[※] 소방전술 세부범위는 시험일 기준 당해연도 발행되는 **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공통교재 (소방전술 Ⅰ·Ⅲ·Ⅲ) 범위**로 한다.

「소방공무원법」 출제범위 (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별표 1)

법령체계도

소방공무원법

상하위법	신구법	판례	현재결정례	법령해석례	행정심판례	의견제시사례	입법추진현황
본문 제정:개정문 연혁 3단비교 신구조문대비표							

☑ 상하위법

□ 사행된 소방공무원법 [시행 2020. 4.1.] [법률제16768호, 2019. 12.10., 전부개정] 본문 3단비교 판례등
□ 사행된 소방공무원임용령 [시행 2020. 6.30.] [대통령령 제30807호, 2020. 6.30., 타법개정]
□ 사행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[시행 2020. 4.1.] [행정안전부형 제169호, 2020. 3.13., 일부개정]
□ 사행된 공무원고충처리규정 [시행 2020. 4.1.] [대통령령 제30803호, 2020. 3.10., 타법개정]
□ 사행된 공무원보수규정 [시행 2020. 6.23.] [대통령령 제30803호, 2020. 6.23., 타법개정]
□ 사행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[시행 2020. 4.1.] [대통령령 제30515호, 2020. 3.10., 타법개정]
□ 사행된 소방공무원 금요 [시행 2020. 4.1.] [대통령령 제30515호, 2020. 3.10., 타법개정]
□ 사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[시행 2020. 4.1.] [대통령령 제30515호, 2020. 3.10., 타법개정]
□ 사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[시행 2020. 4.1.] [대통령령 제30515호, 2020. 3.10., 타법개정]
□ 사행된 소방공무원 당계령 [시행 2020. 4.1.] [대통령령 제30515호, 2020. 3.10., 타법개정]
□ 사행된 소방공무원 장계령 [시행 2020. 4.1.] [대통령령 제30515호, 2020. 3.10., 타법개정]

필기시험문제 문의서

성 명		응시번호		
연락처	• 휴대전화 : • 이 메 일 :			
응시분야	• 2020년도 승진시험(소방)			
질의과목	• 해당과목 : • 문항번호 : A형 -	- 00번, B형 - 00)번	

<출제문제>

<사유 및 관련근거> - 질의사유 및 관련근거 반드시 기재

<응시자 의견>

코로나-19 예방을 위한 안내문

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

- ▼ 응시생은 <u>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,</u>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,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.
 - ※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- ※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
- ▼ <u>발열,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</u> 반드시 감염관리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- ▼ 시험실 안·밖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▼ 시험시간 외에도 <u>다른 수험생과 1.5m 이상 거리를 확보</u>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▼ 응시생은 수시로 <u>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</u> 씻거나,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시기 바랍니다.
- ▼ 응시생 개인이 사용한 휴지, 마스크 등은 <u>시험장에 버리지 말고,</u>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
- ▼ 시험시작 후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<u>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</u> 잠깐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.
- ▼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<u>14일간 발열, 호흡기</u> <u>증상 등을 모니터링</u>하여 증상 발생 시 <u>질병관리본부 콜센터</u> [☎1339, 지역번호+120]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필기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.
- ※ 확진환자는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.
- ※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1조제3항에 의거 격리대상자 등은 시험장에서의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.
 - ➡ 자가격리자(최근 14일 이전 해외입국자 포함) → 별도장소 응시 → 응시자에게 별도 통보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수칙



• 코로나비이건스간염등-19 참보는 코로나 e RARKIX neovumohw.go.lar 🔾 메시 확인하세요!

발명일: 2020. 2. 25

감염병 예방수칙(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)



2차검사 문진표

2차검사 문진표

※ 문진표는 감염병관리전담자 직접 작성

■ 성명 : ■ 응시번호 :						
A. 증상 (해당항목에 ☑하세요)						
□ 발열(37.5℃ 이상) (℃)	1					
□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	2					
B. 조사대상 유증상자(해당항목에 ☑하세요)						
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	3					
□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,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	4					
C. 노출/접촉력(해당항목에 ☑하세요)						
□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	5					
D. 해외 방문(해당항목에 ☑하세요)						
□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에서 입국한 자	6					
■ 조치결과						
□ 일반시험실 () * A 증상이 경미 한 경우 ※ 고막 체온계로 체온 측정 후 37.5℃ 미만 일 경우						
□ 예비시험실 () * A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※ 고막 체온계로 3회 측정 후 2회 이상 37.5℃ 이상 ~ 38.4℃ 이하 일 경우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있는 경우 동의서 작성 후 예비시험실에서 응시 조치						
 □ 격리시험실 () * 38.5℃ 이상 고열이 지속되는 등 격리가 필요한 경우 ※ 고막 체온계로 3회 측정 후 2회 이상 38.5℃ 이상 고열 및 호흡기 증상이 심한 경우 동의서 작성 후 격리시험실에서 응시 조치 						
□ 보건소 이송 () * B, C, D에 해당하는 경우 수험생의 상황이 자가격리자에 해당되므로 시험장에서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. 보건소 이송 후 추후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.						

예비시험실 응시에 따른 수혐생 동의서

예비(격리)시험실 응시에 따른 수험생 동의서

시험명			시험장	()학교		
인적사항	성명 :	00	시번호 :				
시험실구분	□ 예비시험실		□ 격리시]험실			
スムゴ	주민등록주소 : (27 H.P)						
주소지	실거주지 :						
수 힘 생 동 의 서							
본인은	발열, 기침,	호흡기질횐	등 김	남염증 증	·상으로 의심		
되는 부	부분이 있어 당	해 시험장	담당자	의 문진	결과에 따라		
 예비(결	리)시험실에서	시험에 응	-시하고	'자 합니	다.		
			•	2020년	9월 6일		
				_			
		수험생	성 명	}	(서명)		
				20)20년 9월 6일		
예비시험	실감독관 : 소속	직급	_	성명	(서명)		
감염관리	책임관 : 소속	직급	_	성명	(서명)		
대구광역시장 귀하							